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2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19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2. 19(목)	담당부서	엔지니어링디자인과
담당과장	이한철 과장(044-203-4550)	담 당 자	김현정 사무관(044-203-4556)

「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」 제정

- 적정 대가 지급으로 제값 받는 산업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, 이하 산업부)는 금일(20일(금))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**「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」**을 **제정·고시**한다.

□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**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**과 **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**이 지속돼 왔다.

○ **발주기관**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,

○ **디자인 개발을 수주 받은 업체**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.

□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셈(투입인원수)에 노임단가(디자이너 월급여)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**'실비정액가산방식'**을 **기본원칙**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.

○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산업부는

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·공표 기관으로 **'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'를 지정**했다.

○ 또, **디자이너**의 **창조성**과 **표현 노하우**, **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**에 **대해서도 '창작료'**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□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**민간 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**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,

○ **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**에 기여하고 **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**와 **디자인 품질**이 **향상될 것으로 기대**한다고 밝혔다.

□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,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,

○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**www.dsninfo.or.kr를 통해 대가 산정 서비스(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)**를 '20년 2월부터 **제공**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산업부는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·활용될 수 있도록 **「디자인 표준계약서」**에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, **전국 설명회**도 **개최**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김현정 사무관(☎ 044-203-45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「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」 주요 내용**

<「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」 구성 >

① 1장 총칙 (제1조~제5조) : 목적, 적용범위, 대가산출의 기본 원칙 등 명시
② 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(제6조~제11조) :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, 창작료 등의 산정방법 명시
③ 3장 표준품셈의 관리 (제12조~제18조) :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근거 명시, 표준품셈 확정
④ <별표1> 직접경비 항목, <별표2> 제경비 항목, <별표3> 디자이너 등급인정기준

□ 적용 범위

○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2*(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)에 따른 **국가기관 등**이 **발주**하는 **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추진시** 적용

□ 산정 방식

○ 디자인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업인바, 사업내용에 따른 **투입인원**(디자이너) **비용**을 **산정**하는**'실비정액가산방식' 적용**

* **실비정액가산방식** = 직접인건비(표준품셈×노임단가) + 직접경비 + 제경비 +창작료

구분		산정방법	비고
직접 인건비	품셈 (투입인원수)	표준업무 기반으로 작성	표준품셈표 이용
	노임단가	디자이너 등급을 6등급으로 분류	디자이너 노임단가 실태조사
직접경비		실비 산정	정산
제경비		직접인건비 × 110~120%	비정산
창작료		(직접인건비+제경비) × 20~40%	비정산

- **직접인건비** : 표준업무에 따른 인력산출(표준품셈), 통계법에 따른 조사(노임단가)
- **직접경비** : 직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실제 소요비용에 감안하여 산정 및 정산
 (예시 : 인쇄비, 모형제작비, 시안비, 전문가 활용비 등)
- **제경비** : 업무관리비,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
 (예시 : 사무실비, 사무용 소모품비, 비품비, 제세공과금, 복리후생비 등)
- **창작료** :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창작 가치와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포괄

○ **(품셈**(디자이너 투입인원수)**) 업무단계, 난이도, 수행기간, 등급별 투입인원수**를 **고려**하여 4개 분야*의 **표준 품셈 마련**

* 제품, 시각(BI), 시각(Graphic&Editorial), 패키지, 서비스 · 경험 등 4개 분야

○ **(디자이너 노임단가)** 디자인전문회사의 **디자이너 등급*별 노임실태조사**를 실시하고 **매년'노임단가'발표**

* 디자이너의 경력, 학력,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여 총괄,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, 보조 등 6등급으로 구분하여 노임 실태를 조사

□ 표준 품셈 관리

○ **산업부**는 **표준품셈**의 **인가, 관리** 등을 위해 **품셈관리기관**을 **지정하고, 관리기관**은 **표준품셈 심의·의결**을 위하여 **'표준품셈 심의위원회'** 운영

※ (위원회 운영) 디자인 산업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3단 위원회 운영
1 심의위원회 : 당해년도 품셈 제·개정 항목 선정 및 최종인가를 위한 심의
2 부문위원회 : 실질적 품셈 사용자인 발주기관의 의견 수렴
3 전문가협의회 : 품셈 제·개정에 필요한 자료 지원과 업계의 의견 수렴

<표준품셈 업무체계 및 위원회 구성>

